[별표 2] 신체장해등급표

급수	보험급여	신체장해내용
		1.두 눈이 실명된 사람
제1급		2.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
		람
		3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
	연금 329일	아야 하는 사람
	일 시 금	4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
	1,474일분	람
		5.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
		6.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
		7. 두 다리를 무릎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
		8.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
		1.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02이하로 된 사람
		2.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02이하로 된 사람
	연금 291일	3.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
제2급	일 시 금 1,309일분	4.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
		5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
		받아야하는 사람
		6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
		1.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06이하로 된 사람
	61 7 0576)	2.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
제3급		3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
게이ㅂ		4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
	1,100包亡	4. 당학구성기의 기술에 무엇한 성에게 함약 발생성한 고구에 성개될 무 없는사람
		5.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	연금 224일 일 시 금 1,012일분	1.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06이하로 된 사람
		2.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
		3.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
제4급		전히 잃은사람
		4.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
		5.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
		6.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	7.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

하로 된 사람
게 된 사람
하게 된 사람
ト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
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
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
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
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
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
하게 된 사람
가 남은 사람
쓰게 된 사람
못쓰게 된 사람
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
하로 된 사람
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
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
된 사람
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
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
나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
닣 은 사람
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

		9.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
		10.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
		11.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	12.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
		13.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
	일시금 495 일분	1.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.02이하로 된 사람
		2.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
		3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
		4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
		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
		못쓰게 된 사람
제8급		5.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
		6.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	7.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	8.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
		9.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
		10.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		11.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
		1.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6이하로 된 사람
		2. 한 눈의 시력이 0.06이하로 된 사람
		3. 두 눈에 모두 반맹증,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
		4.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
		5.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
		6.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
		7.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
		못하게 된 사람
-110 T	일시금 385 일분	8.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
제9급		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
		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
		9.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
		10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
		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
		잃은 사람
		11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
		람
		12.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

		13.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	14.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
		15.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
		15. 선정계등의 기종 또는 정선기동에 정해가 함약 도구가 정칭한 정도도 제한된 사람
		, = = , =
		16.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. 한 눈의 시력이 0.1이하로 된 사람
		2.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
		3.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
		4.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
		4. 안 되의 정확이 첫마취에 대고 할아서 아니아고시는 는 말모니를 할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
		5.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
		듣지 못하게 된 사람
-1) 1 O 7	일시금 297	6.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
제10급	일분	7.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
		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
		8.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
		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
		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	9.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
		10.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
		11.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
		12.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
	일시금 220 일분	1.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
		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
		2.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
		3.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
		4.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
		듣지 못하게 된 사람
제11급		5.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
		6.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
		7.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
		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	8.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
		사람
		9.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
		10.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

		11.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
	일시금 154 일분	지 못하게 된 사람 1.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
		해가 남은사람
		2.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
		3.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
		4.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
		5. 쇄골, 흉골, 늑골,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
		6.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
		7.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
제12급		8.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
		9.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	10.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
		발가락을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
		11.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
		사람
		12.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
		13.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
		14.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
	일시금 99	1. 한 눈의 시력이 0.6이하로 된 사람
		2. 한 눈에 반맹증,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
		3.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4.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
		5.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
		6.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
		7.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
제13급	일분	8.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
	E L	9.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
		10.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
		사람
		11.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
		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
		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	ما ما تا	1.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
제14급	일시금 55	2.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
	일분	3.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

- 4.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
- 5.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- 6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
- 7.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 된 사람
- 8.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
- 9.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
- 10.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
- 11.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